

【별지 제1-1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2025.7.22.>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소재지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본 점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⑭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⑮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⑯ 명칭(상호)		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법인등록번호			
	⑳ 대표자 성명		㉑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㉒ 소재지					
㉓ 홈페이지 주소						
구 비 서 료	㉔ 전화번호(영업소)		㉕ 전화번호(휴대전화)			
	㉖ 광고용 전화번호					
	㉗ 대표자 주소					
	㉘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청인(대표자) 귀하 서명 또는 날인 </div>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료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대부업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인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div> <p>※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㉔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 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㉕ 주요 주주·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㉖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㉑ 대부잔액			
	㉒ 매입채권잔액			
	㉓ 업무용 부동산			
	㉔ 업무용 동산(차량 등)			
	㉕ 현금 및 예치금			
	㉖ 기타자산			
부채 총계(B)				
	㉗ 차입금잔액			
	㉘ 기타부채			
순자산(A-B)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⑩, ⑭, ⑮, ⑯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⑩, ⑯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㉓란 작성)
 - 가. '대부잔액' (㉔) 및 '매입채권잔액' (㉕)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 나. 업무용 부동산(㉖) 및 동산 등(㉗)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 차입금(㉘) 및 기타부채(㉙)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 가. 법인의 경우
 -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